과실상계란

과실 이론

▣ 법규정 및 약관규정

☞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민법 제763조 “준용기준 “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제396조(과실상계), 제399조(손해배상자의 대위)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 과실상계의 개념

☞ 과실상계의 개념 :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게 되는데 이를 과실상계라 한다.

☞ 과실상계의 근거 : 피해자의 과실에 의해 초래된 손해는 자신의 부담으로써 결코 타인에게 전가 할 수 없으며, 가해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손해는 가해자 자신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 " 이라는 손해배상의 기본 원리에서 그 이유를 찾 을 수 있다.

☞ 보험금지급기준상 과실상계방법

- 과실상계의 범위 : 직접손해와 간접손해 모두에 대하여 과실상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동기준에 없거나 동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한 때에는 판례를 참작하여 적용한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한다.

주) 상기와 같이 보험사고 차량에 대하여 보험회사에서 과실을 산정하므로 과실 분쟁 차량에 대하여 수리완료까지 과실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는 반드시 차량 수리비 전액을 수령한 후 출고를 하여 장기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물배상의 지급기준

가. 지급대상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수리비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다만, 경미한 손상(*1)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함

(*1)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

(2) 열처리 도장료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량연식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

(3) 한도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지급함. 다만,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0%를 한도로 함 (자기차량은 해당하지 않음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 내용연수(*1)가 지난 경우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화물자동차

(*1)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기준표」에서 정하는 내용연수를 말합니다.(자가용승용차,자가용승합차,자가용화물차의 내용년수는 15년입니다)

대물배상의 지급기준

▣ 대 차 료

☞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차량 수리기간동안 렌트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는 비용)

(가)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 상당액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대차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대차료의 35% 상당액

(다)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5% 상당액

▣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가. 지급대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주) 정비업체에 입고 수리한 보험사고 수리차량이 피해물인 경우 고객분들의 차량시세 하락손해(격락손해)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